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8. 8. 26(월) /총 2매(본문 2)
담당 부서	공항안전환경과	담당자	• 과장 방현하, 김세연 사무관, 정의용 주무관 • ☎ (044) 201-4347, 4354, 4355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“김포공항 일대 15층→30층 , 고도제한 완화” 보도관련

- 공항주변의 고도제한 완화는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에서 추진 중인 국제기준 변경이 선행된 이후에 국내기준에 대한 검토를 거쳐 적용이 가능합니다.
- 지난 ‘18.8.16일 우리부는 공항주변의 장애물 설치 관련한 비행 안전을 검토, 분석하기 위한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을 지정 고시 하였으나, 이는 향후 국제기준 개정에 대비하여 국내의 제도적 기반조성 차원에서 진행된 사항이며,
 - 현재, ICAO에서는 전담팀(T/F)을 구성하여, 모든 체약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장애물제한표면 개정, 항공학적 검토 절차 등을 논의 중에 있는 바, 이러한 ICAO의 국제기준이 개정된 이후에나 국내 공항의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고도제한에 대한 검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
<관련 보도내용 (서울신문, 8.27) >

- 김포공항 일대 15층→30층, 강서구, 시범사업속도 낸다.
- 70년 숙원 고도제한 완화
- 국토부 지정 교통연구원과 새달 후속사업 추진 협의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김세연 사무관(☎ 044-201-435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